

#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1.11.07

개정 2006.01.18

개정 2012.03.16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협의회는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직장내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자주적으로 협의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경산시청 내에 둔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협의회 발전에 관한사항
2. 직장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협의
3. 회원의 권익보호, 친선도모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2 장 회원의 자격 및 조직

### 제4조(회원의 자격)

①(정회원)협의회의 회원은 경산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 3조에 규정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자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

②(준회원)6급이하 공무원중 법령 또는 기타사유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준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준회원은 권리 및 의무는 제한되며 가입·탈퇴, 회비등은 정회원과 동일하다

③(후원회원) ①호와 ②호외의 직원들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할수 있다. 다만, 후원회원은 권리 및 의무는 제한되며 가입·탈퇴, 회비등은 정회원과 동일하다(신설 2012.3.16)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www.haansoft.com )

## 제5조(협회의 가입 및 탈퇴)

- ① 협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며 사망, 퇴직자는 당연 탈퇴로 본다. 다만, 제명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으며 제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협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 별도의 탈퇴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회원으로서 모든 활동에 균등해 참여할 권리
  2. 협회 회장 및 협의위원 등 임원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3. 협회의 안건 및 기타 의견을 제안할 권리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규정과 의결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
  2. 협회의 방침에 따를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협회의 활동에 참가할 의무

## 제7조(협회 회장과 협의위원 등)(개정 2012. 3. 16)

-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협의위원 8명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4인(남2, 여2)
    - 사무국장 1인
  3. 감사위원 2인 이내
-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협의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회장
  1.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 소집시 의장이 된다.
  4. 기타 임원을 임명한다.
  5. 기관장과의 협의권을 갖는다.

6. 조직 질서 유지와 회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각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8. 규정 해석권을 갖는다.
9. 기타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④ 부회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대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나이순으로 한다.

⑤ 사무국장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회비를 수납한다.
3.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⑥ 감사위원은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 등 업무를 감사한다.

**제8조(대의원 및 고문)**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위원을 둔다

1. 대의원 70인 이내(개정 2012. 3. 16)

2. 고문 7인 이내(2인 이내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본청 및 산하기관별 각 1인으로 구성하되, 소속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얻은자로 한다. 단 여성대의원의 비율이 2할 미만일 경우 그 비율이 2할이 되도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여성대의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전직 회장, 협의위원 및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자 중 협의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투표 또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② 협의위원은 회장이 지명한 4인과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투표 또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4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 규정의거 투표로 선출하는 협의위원은 후보자 중 1인 기명투표로 하되 다수득표자의 순으로 선출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로 협의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⑤ 임원선출의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운영세칙에 의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만료전에 임원이 제명, 탈퇴 등의 사유로 교체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선출은 교체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3 장 기구 및 운영

제11조(회의) 협의회는 총회, 협의위원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실무부서를 둔다.

## 제12조(총회)

- ① 총회는 가입회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 연도 종료 60일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회원의 5분의1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3. 협의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협의 회 홈페이지 또는 회보,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 ④ 제2항제2호의 소집요구에 대하여 회장이 제3항의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요구 대표자가 공고할 수 있다.
- 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소집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이 회원들의 위임장(연서가능)을 제출한 때에는 그 인원 수만큼 참석인원으로 본다.

제13조(총회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협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협의위원, 감사위원 등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회의 존립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

## 제14조(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소집공고한 안건 이외의 안건 상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의 의장은 부회장(연장자 순), 협의위원(연장자 순) 순서에 따르고, 전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자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조항은 협의회의 다른 회의에도 적용된다.
- ④ 총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 진행사항과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협의위원회)

- ① 협의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관장과의 협의, 회원의 고충사항 처리,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총회의 수임사항을 의결한다.
- ② 협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16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회장, 협의위원, 부장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 ③ 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명된 자의 재 가입 승인
  5. 회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6. 기관장과의 협의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7.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제17조(운영위원회)

-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 협의위원, 부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18조(실무부서)

-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무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재정부
3. 조직부
4. 홍보부

② 부서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가. 문서와 인장에 관한 사항
- 나. 협의회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
- 다. 기관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 라. 내,외부 행사에 관한사항
- 마. 외부기관, 타협의회 관련 사항

2. 재정부

- 가. 회비수납에 관한 사항
- 나. 예산,회계 및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3. 조직부

- 가. 회원 및 조직관리, 회원규율에 관한 사항
- 나.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 다. 협의회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 라.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

4. 홍보부

- 가. 각종 정보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 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협의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협의회 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각 부별로 회장이 임명하는 1인의 부장과 5인 이내의 차장을 둔다.

**제19조(기관장과의 협의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한다

1. 직장의 근무환경 개선사항
2. 업무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기관 및 협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

표

##### 제20조(회원의 고충처리)

- ① 협의회는 회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충 사항과 건의사항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접수한다
- ② 협의회는 신고된 고충사항 등을 지체없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대장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는 회원의 고충처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협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제 4 장 재 정

제21조(재원) 협의회는 재원은 회비와 기타 수입금을 총당한다.

제22조(회계년도) 협의회는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익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회비) 회원의 월회비는 7,000원으로 정하고, 회비수납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16)

제24조(기금의 설치) 협의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5조(감사)

- ① 감사는 매년 1회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② 정기감사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고 수시 감사 결과는 회보게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감사결과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에게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5 장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6조(규정의 개정) 협의회 규정의 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 의결한다.

1. 재적협의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2. 재적회원의 5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 제 6 장 상벌

**제27조(포상)** 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의원 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시상할 수 있다.

**제27조의2(징계)**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협의회를 의도적으로 교란하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협의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제2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제명, 정권, 경고로 한다. 다만 정권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29조(징계절차)

① 회원의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에 회부되면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의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 회의시 징계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1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징계위원회는 재심청구시 10일 이내에 재심을 의회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심의 효력은 재심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정지되며, 재심의 대의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30조(징계위원회의구성)** 1심 징계위원회는 협의위원으로 재심징계위원회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징계위원회 의장이 된다.

### 제31조(임원에 대한 탄핵)

- ① 회장 등 임원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탄핵은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탄핵소추를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탄핵이 결정 되면 그 직에서 해임된다.

## 제 7 장 협의회 해산

### 제32조(협의회의 해산)

- ① 협의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해산한다.
- ② 협의회는 해산시 자산 및 회비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 제 8 장 보 칙

제33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의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회 구성시기) 대의원회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 부 칙(2006.1.18)

-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의 임기 기간일) 임원의 임기 최초 기산일은 2001. 11. 10부터 한다.

### 부 칙(2012.03.1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